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가등기의 본둥기절차이행청구의 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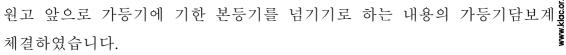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 ○. ○. ○. 접수 제○○○○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20○○. ○. ○.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50,000,000원, 이자 월 3%, 변제기 20○○. ○. ○.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만약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면



한편 피고는 변제기까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□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평가액 금90,000,000원,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금 50,000,000원, 이자 금12,500,000원(50,000,000원 × 365/365 × 25/100), 지연손해금 34,426원(50,000,000원 × 1/365 × 25 ×100), 청산금 평가액 금27,465,754원을 통지하여 그 날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. 그리고 20○○. ○. ○.의 경과로 법정청산기간 2월이 경과하였습니다.

2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 〇 〇 . 〇 .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 사 건 소를 제기합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1통1. 토지대장등본1통1. 소장 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위 귀중



부동산의 표시

1.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-ㅇㅇ 대 ㅇㅇㅇ㎡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) www.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